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3) 중 “2일 이내에 하역항”을 “14일 이내에 하역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4) 중 “2일”을 “14일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
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별표 3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호 차목·카목·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1호	100	150	200
나.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2호	100	150	200
다.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3호	100	150	200
라.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4호	100	150	200
마.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장·포	법 제32조제3			

지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	항제5호			
1) 포장·표지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		100	150	200
2) 별표 1에 따른 포장·표지부착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		60	80	100
차.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6호	100	150	200
카.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6호의2	100	150	200
파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나 자료 제출을 한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7호	100	150	200

별표 4 제1호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의 내용란 중 “처리단가 또는 해상 운송단가 중 큰 값”을 “처리단가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의 요건란 중 “6개월”을 “4개월”로 하며, 같은 호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의 요건란 중 “6개월”을 “4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생활폐기물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427